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예정)일 : 2023.9.11

2. 개정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약관변경 통지방법의 변경 및 통지수단 추가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 1 조 적용범위 ~ 제 5 조 약관의 적용 <생략></p> <p>제 6 조 약관의 변경</p> <p>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p> <p>② 제 1 항의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제 1 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5. <신설> 6. <신설></p>	<p>제 1 조 적용범위 ~ 제 5 조 약관의 적용 <좌동></p> <p>제 6 조 약관의 변경</p> <p>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p> <p>② <u>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변경 내용(신·구조문 대비 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개(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u></p> <p><u>1. 이용자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u> <u>2. 이용자가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이용자가 사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u> <u>3. 이용자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애플워치 등)에 의한 통지</u> <u>4. 거래통장에 표기</u> <u>5.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합니다)</u> <u>6.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u></p>	<p>약관변경 통지방법 변경</p> <p>통지수단 추가</p>

<p>③ <신설></p> <p>④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u>다만, 제 1 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⑤ <u>이용자가 제 3 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u></p> <p>제7조 이자 ~ 제13조 가입기간의 갱신과 적용이율 <생 략></p>	<p><u>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상호·명칭 등)인 경우는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u></p> <p>④ <u>은행은 제 1 항의 게시 또는</u>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u>제 1 항의 게시일 또는 제 2 항의</u>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p> <p>⑤ <u>제 4 항의 게시일 또는</u>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 <p>제7조 이자 ~ 제13조 가입기간의 갱신과 적용이율 <좌 동></p>	<p>단순변경 통지불요</p> <p>의미 명확화 및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삭제</p> <p>의미 명확화</p>
--	--	---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 적용.